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383
------------	------

2021년 6월 16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5월 25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1년 6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백호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7조의2의 개정('13. 9. 6.)으로 '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'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, 사문화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4. 08. ~ 2021. 4. 28.
-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7조의2의 개정('13. 9. 6.)으로 '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'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사문화된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'법') 제58조의2¹⁾에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²⁾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반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토교통부령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법 시행규칙") 제117조의2제5항은 당초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"시·

1)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(모범사업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[시행 2003. 1. 1.] [법률 제6730호, 2002. 8. 26. 일부개정]

2) "자동차관리사업"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·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자

도”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'13년 9월 6일 일부개정³⁾을 통해 “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”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('14년 7월 1일부터 시행)

- '13년 10월 현행 조례 제정⁴⁾ 당시 관련법령을 반영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나 관련 법 시행규칙이 '14년 7월에 시행되어 모범사업자 지정은 자치구 조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법규범으로써의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

- 다만,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약 7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해당 조례를 운용하는 해당 부서 및 서울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관리·감독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

이미 '15년도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개정을 추진⁵⁾했음에도 동 조례가 정비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인 바, 향

3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7조의2제2항 중 “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별표 21의4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”를 “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”로 한다. [시행 2013. 9. 6.] [국토교통부령 제 24호, 2013. 9. 6., 일부개정]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7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

4)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[시행 2013. 10. 4.] [서울특별시조례 제5579호, 2013. 10. 4., 제정]

5)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 중 “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별표21의3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별표21의4”로 한다. [시행 2015. 10. 8.] [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, 2015. 10. 8., 타법개정] _ 제정·개정이유: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‘일괄정비’가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‘일괄개정’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. 주요내용: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비롯해 정비가 필요한 서울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

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
법규를 정비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으로,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(02-2133-2344)